

# 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발의일자및발의자 : 2008. 4. 7. **유영화 의원의 3인**
- 회 부 일 : 2008. 4. 8.
- 상 정 일 : 2008. 4. 14.(제1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유영화 의원)

### 가. 제안이유

제천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부실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안 제2조)
-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해당 지역 주민,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토록 함(안 제4조)
- 각종 공사시 당해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게 함(안 제6조)
-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사업부서의 장, 관할 읍·면·동장에게 시공 상황을 보고하게 함(안 제9조)
-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사전해소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토록 함(안 제11조)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표지판을 설치토록 의무화 함(안 제1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석영)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3천만원 이상의 각종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함으로써 민원해소에 대처하도록 하였고
-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주민,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 주요 공사(50억원 이상) 준공시 시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사업량,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등을 기재한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 하도록 하는 등,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공사부실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답변 요지

#### 가. 질의요지

- 3천만원이상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를 지정 실비를 지급하는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과 중복되지 않는지 여부?(김병창 위원)

#### 나. 답변요지 < 유영화 의원 >

-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은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본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서는 각종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공표지판 설치를 의무화 하고자 하는 것임.

5. 소 수 의 견

“ 없 음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1부. 끝.